1. 노인학대의 유형

1)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고통,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.

2)언어,정서적 학대 : 비난,모욕,위협,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.

3)성적 학대 :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.

4)재정적 학대 :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보상을 하지않는 행위.

5)방임 :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.

6)자기방임 :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,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.

7)유기 : 월별 비용 미납등 이유로 강제 퇴소시키는 행위

2. 노인학대 관련 규정

제1조의2 (정의)

"노인학대"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,가혹행위,유기,방임을 말한다.

제39조의6 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

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,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자
2.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
5. 노인복지상담원,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,전담공무원

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.

제39조의7 (응급조치의무 등)

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8 (보조인의 선임 등)

① 노인의 법정대리인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.

제39조의9 (금지행위)

1.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2.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행위
3.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4.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5. 노인을 위하여 증여,금품을 목적외의 사용하는 행위

제39조의10 (조사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,상담원으로 시설과 주소·거소, 고용 장소,제39조의9의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3. 노인학대 신고방법

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**신고상담전화 1577-1389번으로** 전화하시면 됩니다.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. 그 외에도 **1577-1389번을** 통해 학대 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, 복지서비스, 법률서비스, 의료서비스, 보호서비스,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

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

1. 노인학대 신고접수(1577-1389) 및 현장조사
2.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연계: 상담
3.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: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
4.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5.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: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
6.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 교육

신고상담전화 1577-1389번